임직원 행동강령

제정 2013.10.04. 개정 2014.11.06. 개정 2015.10.30. 개정 2016.04.04. 개정 2016.11.02. 개정 2017.03.23. 개정 2018.01.22. 개정 2018.04.05. 개정 2018.07.26. 개정 2018.08.29. 개정 2020.05.21. 개정 2022.01.13. 개정 2022.07.29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임직원 행동강령(이하"행동강령"이라 한다)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직원"이라 함은 공제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직원을 말한다.
- 2. "직무관련자"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(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)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가.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등록 및 공제금 지급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- 나.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- 다. 기타 공제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
 - 라. 정책·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 마.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
- 3. "직무관련임직원"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.
 - 가.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
 - 나. 인사·예산·감사·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한 해당 임직원
 - 다.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
 - 라.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

- 4. "금품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 - 나. 음식물・주류・골프 등의 접대・향응 또는 교통・숙박 등의 편의 제공
 - 다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

제3조(적용범위) 이 행동강령은 공제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**제4조(준수의무와 책임)** ①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 - ②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행동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임원(비상근 임원 포함)은 청렴성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반부패·청렴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08.29>
 - ③제2항 규정에 따른 반부패·청렴실천 서약서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자가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8.08 29>
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
- **제5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)**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[별지 제1호 서식]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, [별지 제2호서식]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(이하 "행동강령책임관"이라 한다)과 상담할 수 있다.<개정 2022.07.29.>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[별지 제2호 서식]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.<개정 2022.07.29.>
 -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·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6조 삭제<2022.07.29.

제6조의2 삭제<2022.07.29.>

제6조의3 삭제<2022.07.29.>

제6조의4 삭제<2022.07.29.

제6조의5 삭제<2022.07.29.

제6조의6 삭제<2022.07.29.>

- 제7조(특혜의 배제)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·혈연·학연·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 임직원은 출장비·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공제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 ①임직원은 공무원,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[별지 제10호 서식]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 야 한다.<개정 2018.4.5>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- 제11조(고객존중) 임직원은 고객이 공제회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최우선 기준으로 한다.
- 제12조(고객만족)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.

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.

- 제13조(고객의 이익보호)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, 영업비밀, 고객정보 등을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적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.
 -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정확하고 신속 하게 제공한다.

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
- 제14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제회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의2(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)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·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.
- 제15조(알선·청탁 등의 금지)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(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.)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8.4.5>
 -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정 2018.4.5>
 - ③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•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·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8. 4. 5>
 - 1. 특정 개인·법인·단체에 투자·예치·대여·출연·출자·기부·후원·협찬 등을 하 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 - 2. 채용·승진·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 - 3.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
 - 4. 계약 당사자 선정,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 - 5. 특정 개인·법인·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·교환 ·사용·수익·점유·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
 - 6.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 - 7. 각종 수상, 포상,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,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
- 8. 감사·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·법인·단체가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·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
- 9.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[전문개정 2018.4.5]
- 제16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 ①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·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.
 - 1. 정보의 범위: 상훈,인사,조직,정보화,회계,예산,재정,지역개발,지방공기업,지방재정,지방세정,재해공제,배상공제,통계관리,옥외광고,감사 등
 - 2. 대상자: 제1호 업무관련 임직원
 - 3. 제한기간 :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

제17조 삭제<2022.07.29.

- 제18조(금품 등의 수수 금지) ①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②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제2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(收受)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 - 1.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·격려 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 - 2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[별표 1]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
 - 3. 사적 거래(증여는 제외한다)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(權原)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
 - 4. 임직원의 친족(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이 제공하는 금품등
 - 5.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·동호인회·동창회·향우회·친목회·종교단체·사회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·재난 등으로

-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
- 6.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, 음식물 등의 금품등
- 7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·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
- 8. 그 밖에 사회상규(社會常規)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
- ④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[별지 제11호 서식]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4.5>
- ⑤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·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(이하 "수수 금지 금품등"이라 한다)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·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⑦임직원은 공제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3항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18조의2조(사적 노무 요구 금지)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18.4.5.]

- 제18조의3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- 1. 인가·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·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
 - 2.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·요구를 하는 행위
 - 3.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·용역·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(轉嫁)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<개정 2022.07.29.>
 - 4.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

5. 그 밖에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임직원,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·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<신설 2019.6.18>

제19조 삭제<2016.10.20.>

제20조 삭제<2016.10.20>

- 제21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 ①임직원은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입찰, 계약 및 계약 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.
 -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,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,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2조(청렴계약제의 준수) 제21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입찰,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제5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

- 제23조(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) 임·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·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4조(투명한 회계관리) 임·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) ①임·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공제회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임·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6조(투명한 정보의 공개)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·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 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.

제6장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

- 제27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 ①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 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 의 대가로서 [별표 2]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 - ②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[별지 제12호 서식]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개정 2020.5.21.>
 -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1.22>
 - ④ 삭제〈2020.5.21.〉
 - ⑤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<개정 2020.5.21.>
 - ⑥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 - ⑦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[별지 제16호 서식]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<개정 2018.4.5>
 - ⑧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 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27조의2(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)①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(이하 "초과사례금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[별지 제13호 서식]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4.5>
 -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(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)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 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8조 삭제<2022.07.29.

제28조의2 삭제<2022.07.29.

- 제29조(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)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.
 -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친족(「민법」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에게 알리는 경우
 - 2.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
 - 3. 신문,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
 - 4.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・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
- 제29조의2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신체적 괴롭힘 : 신체적인 폭력 및 위협
 - 2. 개인적 괴롭힘: 근거 없는 비방·소문·누명, 대화 및 친목 모임에서 제외(집단따돌림), 회식·음주·흡연 강요. 외모·가정생활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
 - 3. 언어적 괴롭힘 : 욕설, 고성, 공격·위협적 언어 사용, 비하·굴욕적 언어 사용
 - 4.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
 - 5.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
 - 6.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
 - 7.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반복·지속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
 - 8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•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<개정 2018.8.29.> [본조신설 2017.3.23.]
- 제29조의3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) ①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 등을 하는 기관(이하이 조에서 "감독기관"이라 한다)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·행사·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·감사·조사·평가 등을 받는 기관(이하이 조에서 "피감기관"이라 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.
 - 1.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
 - 2.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
 -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,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[별지 제19호의2 서식]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,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신설 2019.6.18>

제7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

- 제30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 ①임직원은 알선·청탁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, 금품 등의 수수,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, 경조사의 통지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, 행동강령책임관은 [별지 제22호 서식]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4.5., 2019.6.18>
 -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·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)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때에는 [별지 제21호 서식]에 따라 당해 임직원이 이사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<개정 2018.4.5>
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.
 -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,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32조(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리)** 공제회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고발은 「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칙」등에 따라 처리한다.
- 제33조(신고인의 신분보장)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·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 -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은 이 행동강령에 의한 상담·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
- 제33조의2(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) ①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징계) ①이사장은 행동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4.4.>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공제회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금품등 수수(授受)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

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, [별표 3]의 금품등 수수(授受)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,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- ③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.
- 1.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: 파면
- 2.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: 파면 -해임
- 3.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: 강등-정직
- 4.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: 감봉-견책 <신설 2019.12.3.>
- 제35조(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) ①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[별지 제15호 서식]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4.5>
 - 1.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
 - 2.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·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
 - ②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제공자"라 한다)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한다.
 - ③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[별지 제16호 서식]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<개정 2018.4.5>
 - ④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멸실·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
 - 3.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 - ⑤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[별지 제17호 서식]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18. 4. 5>
 - 1.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: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
 - 2.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·감사·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: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
 - 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·부패·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·제출 ·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: [별지 제18호 서식]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 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<개정 2018. 4. 5>

- 4.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·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
- ⑥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[별지 제19호 서식]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4.5>
- ⑦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·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6조 삭제<2016.10.20.>

제8장 보 칙

- 제37조(교육)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·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 - 2.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, 이권개입, 알선·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·제한에 관한 사항
 - 3.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
 - 4.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・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<신설 2019. 6. 18>
- 제38조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 ①이사장은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, 소속기관의 규모·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 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행동강령책임관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.
 -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행동강령의 교육・상담에 관한 사항
 - 2.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·접수·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⑤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

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- 제39조(준수여부 점검)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 -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,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**제40조(포상)** 이사장은 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41조(행동강령의 운영) 이사장은 행동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 관련 양식은 [별표 제1호~제3호], [서식 제1호~제25호]를 사용한다.<개정 2018.4.5., 2022.07.29.>

부 **칙<**규칙 제200호, 2013.10.4.>

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부 칙<규칙 제250호, 2014.11.6.>

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.

부 칙<규칙 제265호, 2015.10.30.>

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<**규칙 제272호, 2016.4.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280호, 2016.11.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 개정 규정 및 제27조의 인2의 신설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.

부 **칙<**규칙 제295호, 2017.3.23.>

이 규칙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315호, 2018.1.2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) [별표 1]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) [별표 2]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규칙 제327호, 2018.4.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5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,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 **칙<**규칙 제331호. 2018.7.26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333호. 2018.8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미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는 임원은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반부패· 청렴실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규칙 제427호, 2019.6.18.>

이 규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며 2019년 6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부 **칙<**규칙 제438호, 2019.12.3.>

이 규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하며 2019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<규칙 제453호, 2020.5.21.>

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**칙<**규칙 제495호, 2022.1.13.>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규칙 제507호, 2022.7.29.>

이 규칙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음식물 · 경조사비 · 선물 등의 가액 범위(제18조 관련)

- 1. 음식물(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, 다과, 주류,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): 3만원
- 2. 경조사비: 축의금・조의금은 5만원. 다만, 축의금・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・조화는 10만원.
- 3. 선물: 금전, 유가증권, 제1호에 따른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,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. 다만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(이하 "농수산물"이라 한다)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(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, 이하 "농수산가공품"이라 한다)은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

비고

- 가. 제1호, 제2호 본문·단서 및 제3호 본문·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나. 제2호 본문의 축의금·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·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,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다.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(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)으로 하되,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라. 제1호의 음식물,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.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경조사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 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.
- 마.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, 직무관련자,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
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(제27조 관련)

1.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

- 가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(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: 40만원
- 나.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, 외국정부, 외국대학, 외국연구기관, 외국학술단체, 그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- 다.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2. 적용기준

- 가.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.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.
- 나.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다.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.
- 라.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
금품등 수수(授受)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(제34조 관련)

금액 무수 수행 위		백 /	100만원 미만	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	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	
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 련자 또는 직무관련	수	\Box	감봉 · 정직 · 강등	강등 · 해임 · 파면	해임·파면	파면
공무원으로부터 받거 나 직무관련공무원에 게 제공한 경우	부터 받거 련공무원에		파면			
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	수 :	애	정직 · 강등 · 해임	해임·파면	파면	
나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능 :	씽	강등·해임·파면		파면	
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,	수 :	씽	강등 · 해임 · 파면		파면	
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녱	땅	해임 · 파면		파면	

[※]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.

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일자	
. 5401	성명		생년월일	
소명인	소속		직위(직급)	
상급자 (지시자)	성명		직위(직급)	

T	Į,	받은	Y	나하

소명 내용

			0.1
	년	월	일
소명인		(서명 또는 인)

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
11510 +101	성 명		생년월	일
상담요청인	소 속		직위(직	급)
상급자 (지시자)	성명		직위(직	급)

지시받은 사항

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

년 월 일 상담요청인 (서명 또는 인) [별지 제4호 서식] <삭제 2022.7.29.>

[별지 제8호 서식] <삭제 2022.7.29.>

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(상담요청)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처리일	자		
보고자	성 명		생년월일			
(상담요청인)	소 속		직 위 (직 급)			
정치인 등	성 명		직 책			
인적사항	소 속		전화번호			
요구사항						
부당한 근거						
				년	월	일
	보.	고자(상담요청인)			(서명 또	는 인)

금품등 수수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
신 고 자	성명 소속			등록번호 인등록번호) 처		
	주소					
금품등을	성명 직업 (소속) 주소		연락	처		
제공한 자	법인 • 단체등의 경우	명칭				
		소재지 대표자 성명				
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						
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						
	일시					
금품등	장소					
수수 내용	금품등의 종류 및	가액				
증거자료						
비고						
위와 같은	사실을 신고합니다.					
				년	월	일
		신고자			(서명 또	는 인)

외부강의등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		처리일자			
	성명		소속				
신고자	직위 (직급)		연락처				
외부강의등	[] 교육, 홍보, 토론회, 세미나	, 공청회					
유형	[] 회의						
활동 유형	[] 강의, 강연		[] 기고				
Ξο πδ	[] 발표, 토론, 심사, 평가, 자든	문, 의결	[] 기타()		
0. +1.01	기관명		대표자				
요청인	담당부서 (담당자)		연락처				
요청 사유							
외부강의등 주제							
장 소							
일 시	20 ~ 20 시 분~ 시 분	일괄신고		균 횟수 : 권 시간 :			
사례금	총액 <u>천</u> 원 (※ 1회 평균 (교통비・숙박비・식비(실비)	대가 <u>천원</u> 별도) (※	천원) 1회 평균 교	통비・숙박비	• 식비		천원)
		¬=1			년	월	일
	<u> </u>	고자				(서명	또는 인)
		유 의 사 항					

- 1.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, 회의명, 행사명 등을 기재함.
- 2. 대가 총액은 교통비・숙박비・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・숙박비・식비는 () 속에 별도 기재
- 3.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.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,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.

초과사례금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
	성명		소속			
신고자	직위 (직급)		연락처			
외부강의등	[] 교육, 홍보,	토론회, 세미나, 공청회				
유형	[] 회의					
활동 유형	[] 강의, 강연		[] 기고	<u>1</u>		
Ξ Ο πδ	[] 발표, 토론, ·	심사, 평가, 자문, 의결	[] 기티	ł()		
	기관명		대표자			
요청인	담당부서 (담당자)		연락처			
요청 사유						
외부강의등 주제						
장 소						
일 시	20~ 시 분~					
사례금		원 (※ 1회 평균 대가 식비(실비) <u>천원</u> 별도) (※		교통비・숙박비・식비	찬	<u> </u> 원)
초과사례금	초과사례금 액수	: : <u>천원</u>				
초과사례금 반환	반환여부 : 반환방법 :	반환금액 :		※증병	!서류 첨부	
'				년	월	일
		신고자			(서명 또는	= 인)

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

섭수번호		섭수일사 		저리일사		
	성명			·록번호 등록번호)		
신 고 자	소속		연락처			
	주소					
	성명					
	직업 (소속)		연락처			
금품등을	주소					
제공한 자	법인 • 단체등의 경우	명칭				
		소재지				
		대표자 성명				
신고취지 및 이유						
	일시					
금품등 수수 내용	장소					
1 1 -110	금품등의 종류 및 기	가액				
금품등	반환여부					
반환여부 및 방법	반환 일시・장소 및	! 방법(반환한 경우)				
증거자료						
비고						
위와 같은	사실을 신고합니다.					
				년	월	일
		신고자			(서명 또	는 인)

반환비용 청구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	
	성명		생년월일				
청구인 	소속		직위 (직급)				
청구금액							
반환계좌	금융기관명 : 계 좌 번 호 :						
	금품 (물품)						
반환금품	수량 (금액)						
및	받은일시						
처리내역	반환일시						
	증빙서류 목록				※증	빙서류(사본) 첨부
	성명		주소				
	연락처		청구인과의 관계				
반환받는 사람	직무관련 내용						
기타 사항							
					년	월	일
		청구인				(서명 또는	= 인)

금품등 인도확인서

	성명		소속	
인도자	직위(직급)		연락처	
신고 접수번호				
품목 (상표)				
수량				
가액 (상당액)				
물품사진	※ 필요시 동영상 첨부			
	위	금품등의 인도를 즉	확인합니다.	
		인도일: 20 .		
	인도자	소속 :	성명 :	(서명 또는 날인)
	인수자	소속 :	성명 :	(서명 또는 날인)

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

인도자	성명		소득	소속	
	직위(직급)		연택	박처	
신고 접수번호					
품목 (상표)					
수량					
가액 (상당액)					
물품사진	※ 필요시 동영상 첨부				
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. 20					
	인도자 소속		성명 :	(서명 또는 날인)	

금품등 관리대장

일	신고		= -		가액		신고자			제공자	-	015	관리		+1-1	4171	
일 련 번 성	신고 접수 번호	신고 일	품목 (상표)	수량	가액 (상당 액)	소속	직위 (직급)	성명	소속	직위 (직급)	성명	인도 일	부서 (관리 자)	보관 장소	처리 결과	처리 일	비고

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
41771	성 명		생년월'	일
신고자	소 속		직위(직	급)
요구자	성명		직위(직	급)
立 	소속			

요구받은 사항

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

년 월 일 신고자 (서명 또는 인)

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일자		처리기	<u>가</u>	60일	
	성명				주민등 (외국인	록번호 등록번호)		
신 고 자	직업 (소속) 주소					연락처			
	성명	TIOLTIC			Mar+I				
		직위(직급)			연락처				
피신고자	주소								
(신고대상)		체등의 경	명칭						
	우	_	소재지						
			대표자 성명	5					
※ 신고내 용 을	 을 확인·조	스사하는 과정		 의 신분을 밝히	 는데		[] 동의		
동의하는지 여부				. ,			[] 부동		
신고취지 및									
이유									
행동강령	일시								
위반행위	장소								
내용	0—								
	내용								
증거자료									
목록								※ 증거자료 첨부	
비고									
위와 같이 1	피신고자(<i>-</i>	신고대상)의	행동강령 위	반행위를 신고합	니다.				
				ПЭТІ			년	월 일	
\cap	○○장		귀하	신고자				(서명 또는 인)	
$\overline{}$			11~1			0100	2 [0] 20	TI COa/ 3/ TI 하나오프\]	

상담기록관리부

상담일시		상딛	함유형	[] 방문	[] 전화	[]기	= ()
	성명		생년월일	<u> </u>				
상 담 요청자	소속/직위(직급)		연락처					
상담 내용								
상담 결과								
						14	OI	01
						년	월	일
	행동강령책임	관					(서명 또는	= 인)

<u>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</u>

('00년 상반기/하반기, 기관명)

1	וכ	ᆝ본ᅵ	나항
	_		

가. 행동강령 적용인원 : 명

※ 적용인원 : 기준일 현재 총 현원(상반기 : 6. 30. / 하반기 : 12. 31. 기준)

- 나. 클린신고센터 설치수:
- 다. 행동강령책임관(기관 본부)

소 속	성 명	
직 위	연락처	
이메일		

라.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

○ 제·개정 내역

명 칭			
제정・개정	제정 (), 개정 ()	일 자	200
주요 내용			

[※]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(첨부①)

2. 행동강령 이행환경

- 가.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
 - 신고창구 접속 경로 : (예: 시작화면 → 민원마당 → 부패신고)
 - 시작화면 ~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: 회
- 나.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
 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: 여·부
 -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: 회
- 다.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
 -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: 관련 파일 제출(첨부②)

○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

구 분	신고 건수	포상 건수	포상금 등 지급실적	인센티브 부여 건수	비고
계			원(상당)	※ 인사상 우대 등	
내 부					
외 부					

3. 추진실적

가.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

○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

상담 분야	상담건수	조치건수	비고
총계			
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			
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			
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			
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			
⑤ 가족채용 제한			
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			
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			
⑧ 특혜의 배제			
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			
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			
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			
② 투명한 회계관리			
③ 이권개입 등의 금지			
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			
⑤ 알선·청탁 등의 금지			
⑥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			
⑪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			
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			
⑲ 금품등의 수수 금지			
②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			
②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			
②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			
② 경조사의 통지			
@ 기타			

나.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

구 분	총 계	강의 • 강연	발표・토론	심사・평가 자문・의결	기 타
신고건수	건	건	건	건	건
신고인수	명	명	명	명	명
외부강의등 시간 (누계)	시간	시간	시간	시간	시간
대 가	만원	만원	만원	만원	만원

- ※ 1.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
 - 2. 60분까지는 1시간,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
 - 3.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

다.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

○ 신고 현황

구 분	건 수	금 액(천원)	비고
계			
수수 금지 금품등 (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)			
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(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)			

○ 처리 현황

구분	계	반 환	기 증	폐 기	기 타	처리중
건 수	()	()	()	()	()	()
금 액						

※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"건수란"에 ()로 표시

라.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

	위반건수(건)	자체적발률(%)	
계 (A+B)	자체적발건수 외부기관통보건수 (A) (B)		A × 100 A+B

4. 행동강령 실천의지

가. 행동강령 교육

○ 교육인원(누계) : 명 ※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

○ 교육실시 내역 ※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

구분	일시	장소	참석인원(명)	주요내용	교재 제작 여부
누계	-	-		-	-
1	2008 4 7.(對	대강당	457	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	(행동강령 조문별 시례집)
2					
:					

나.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

구분	점검 기간	점검 일수	점검 인원	주요 점검사항	위반행위 적발건수
누계	-			-	
1	2008 4 7.(² / ₂ -11.(-]	5일	7	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	1
2					
:					

다.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

○ 수범 사례

○ 수상 내역

수상명	수상 일시	수상 내역	비고

○ 홍보 실적

구분	홍보매체	홍보 횟수	홍보 내용	비고
계				

5.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・처리 내역

※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

1. 위반행위자					일련번호	20 -		
소속					직위			
직급 []	임 원	[] 관리자	[] 직 원		성명	(실명기재)		
2. 위반행위 및	2. 위반행위 및 적발·처분일							
위반행위일	()년()월	적발일	()년	! ()월	징계 등 처분일	[]()년()월 [] 진행중		
3. 위반행위	[] 파면	[] 해임	[] 강등		[] 정직	[] 감봉	_	
처리결과	[] 견책	[] 불문경고	[] 경고・	주의	[] 기타(훈계·	전보발령 등)		
	자체적발 [] 내부공익신고 []	진정/신고	[] 자ㅊ	 감사 [] 기타	직접기재 :)		
4. 적발기관	외부기관 [[] 적발 _[] 상급 감독기관] 검찰청] 국무총리실] 기타(직접기재 :)	[] 감사원 [] 경찰청 [] 국민권 ⁽	익위원회		
5. 행동강령 위험	반행위 내역							
유형	[]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[]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[]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[]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[] 가족채용 제한 [] 수의계약 체결 제한 []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[] 특혜의 배제 []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[]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[] 인사 청탁 등의 금지			[] 직역 [] 알선 한 [] 공원 [] 사건 [] 검택 [] 정택 [] 지역	전개입 등의 금지 위의 사적 이용 등 선·청탁 등의 금 무관련 정보를 이 용재산의 사적 시 적노무의 요구 금 중등의 수수 금지 렴한 계약의 체결 부강의등의 사례를 무관련자등과의 2 조사의 통지 당(직접기재:	금지 지 기용한 거래 등의 용·수익 금지 지 및 이행 금 수수 제한	제	
내역	<i>○ 6하 원칙에</i>	의거, 위반행위 내	<i>l용, 적발·조</i>	SX LHº	병을 상세히 기재			

6. 기타

- 운영상 애로사항
- 개선조치 요청
- 건의사항 등

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

	성명	생년월일
위반자	소속	직위(직급)
	통보받은 문서번호	
	위반내역	
위반행위		
■ 징계의결	미요구 사유	

년	월	일
확인자 (직위)	(서명	또는 인)

임원(비상근 임원 포함) 반부패·청렴실천 서약서

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으로서 **청청 에서상** 을 만들기 위하여 청렴 실천과제를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하나, 나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,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
- 하나, 나는 **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**하여 **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**선다.
- 하나, 나는 **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등도 받지 않** 는다.
- 하나, 나는 **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**한다.
- 하나, 나는 **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**하고 **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**.
- 하나, 나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사 (公私) 구분 없이 모든 생활에 솔선수범한다.

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.

20 년 월 일

소속 : 직위 : 성명 : (서명)